

<宅地建物取引業者向け>

賃貸住宅紛争防止条例に基づく説明書（モデル） 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 同 施行規則 （日－韓 対訳版）

東京都では「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に基づく説明を行う宅地建物取引業者が、外国人借主に対して円滑に説明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モデル説明書」「条例」「条例施行規則」の3点について、日本語対英語・中国語（簡体字）・韓国語の3か国語との対訳版を作成しました。

上記3言語を母国語とする外国人が借主となる賃貸借契約の代理・媒介業務を行う際に、説明の補助資料としてご活用ください。

平成26年10月 東京都都市整備局

－ 目 次 －

◎ 韓国語版

賃貸住宅紛争防止条例に基づく説明書（モデル）	… 1
（参考）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	… 5
（参考）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施行規則	… 9

※ 各ページの構成は、右に韓国語、左に該当する日本語を掲載しております。左右対比しながら、ご利用願います。

※ 翻訳に当たっては、公益財団法人日本賃貸住宅管理協会の協力を得ました。

賃貸住宅紛争防止条例に基づく説明書（モデル） <原文：日本語版>

東京太郎 殿

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

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第2条の規定に基づき、以下のとおり説明します。この内容は重要ですから十分理解してください。

なお、この条例は、原状回復等に関する法律上の原則や判例により定着した考え方を、契約に先立って宅地建物取引業者が借受け予定者に説明することを義務付けたものです。

商号又は名称	<u>株式会社〇〇不動産</u>	商号又は名称	
代表者の氏名	<u>新宿 一郎</u> 印	代表者の氏名	印
主たる事務所	<u>新宿区西新宿〇-〇-〇</u>	主たる事務所	
免許証番号	<u>東京都知事(3)第12345号</u>	免許証番号	
免許年月日	<u>平成〇〇年〇月〇〇日</u>	免許年月日	
取引の態様	代理・ <u>媒介</u>	取引の態様	代理・媒介
説明者	<u>渋谷 次郎</u>	説明者	

※複数の宅地建物取引業者が関与する場合はそれぞれ記入し、説明を行った側は説明者を明記してください。

本説明書の対象建物

物件の所在地	<u>東京都新宿区西新宿〇-△-△ スカイガーデン新宿 〇〇〇号</u>
名称及び室番号	<u>スカイガーデン新宿 〇〇〇号室</u>
賃貸人の氏名・住所	<u>中野 一太郎 東京都中野区中央△-△-△</u>

A-1 退去時における住宅の損耗等の復旧について

1 費用負担の一般原則について

(1) 経年変化及び通常の使用による住宅の損耗等の復旧については、賃貸人の費用負担で行い、賃借人はその費用を負担しないとされています。

(例) 壁に貼ったポスターや絵画の跡、日照などの自然現象によるクロスの変色、テレビ・冷蔵庫等の背面の電気ヤケ

(2) 賃借人の故意・過失や通常の使用方法に反する使用など賃借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る住宅の損耗等があれば、賃借人は、その復旧費用を負担するとされています。

(例) 飼育ペットによる柱等のキズ、引越作業で生じたひっかけキズ、エアコンなどから水漏れし、その後放置したために生じた壁・床の腐食

2 例外としての特約について

賃貸人と賃借人は、両者の合意により、退去時における住宅の損耗等の復旧について、上記1の一般原則とは異なる特約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とされています。

ただし、特約はすべて認められる訳ではなく、内容によっては無効と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参考>判例等によれば、賃借人に通常の前状回復義務を超えた義務を課す特約が有効となるためには、次の3つの要件が必要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①特約の必要性に加え暴力的でないなどの客観的、合理的理由が存在すること、②賃借人が特約によって通常の前状回復義務を超えた修繕等の義務を負うことについて認識していること、③賃借人が特約による義務負担の意思表示をしていること。

A-2 当該契約における賃借人の負担内容について

※特約がない場合：賃借人の負担は、A-1の1(2)の一般原則に基づく費用のみであることを明記してください。

特約がある場合：上記の費用のほか、当該特約により賃借人が負担する具体的な内容を明記してください。

임대주택 분쟁방지 조례에 의거한 설명서(샘플) <한글(가 번역)>

東京太郎 님

○○○○년○○월○○일

도료의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에 관한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므로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판례에 의해 일반화된 개념을 계약에 앞서 택지건물거래업자가 임차예정자에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상호 또는 명칭	주식회사○○부동산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신주쿠 이치로 ㉞	대표자 성명	인
주된 사무소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	주된 사무소	
면허증 번호	도쿄도지사 (3)제 12345 호	면허증 번호	
면허 연월일	○○○○년○월○○일	면허 연월일	
거래 양태	대리·중개	거래 양태	대리·중개
설명자	渋谷 次郎	설명자	

※ 복수의 택지건물거래업자가 관여할 경우는 각각 기입하고 설명을 실시한 측은 설명자를 명기해 주십시오.

본 설명서의 대상건물

물건 소재지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신주쿠 □-△-△ 스카이가든신주쿠 ○○○호
명칭 및 호실	스카이가든신주쿠 ○○○호
임대인 성명·주소	나카노 이치타로 도쿄도 나카노구 주오 △-△-△

A-1 퇴거시의 주택 손모 등의 복구에 대하여

1 비용부담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1) 経年変化 (시간이 지남에따른 자연적인 변화) 및 통상의 사용에 의한 주택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 등의 복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하고, 임차인은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벽에 붙인 포스터나 그림 자국, 햇볕 등 자연현상에 의한 벽지의 변색, 텔레비전·냉장고 등 가전제품 뒷면의 그늘림

(2)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통상의 사용방법에 어긋나는 사용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주택의 손모 등이 있으면 임차인은 그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르는 애완동물에 의한 기둥 등의 손상, 이사작업으로 생긴 긁힌 자국, 에어컨 등에서 누수가 발생한 후에 방치함으로써 생긴 벽면·바닥의 부식

2 예외 특약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양자 합의에 의해 퇴거시의 주택 손모 등의 복구에 대해 상기 1의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약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특약은 전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판례 등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를 넘어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 3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① 특약의 필요성에 추가하여 폭리적이지 않은 등의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것, ② 임차인이 특약에 의해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를 넘어서는 수선 등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것, ③ 임차인이 특약에 의한 의무부담의 의사표시를 했을 것.

A-2 해당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 내용에 대하여

※ 특약이 없을 경우: 임차인의 부담은 A-1의 1(2)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비용만이라는 것을 명기해 주십시오.
 특약이 있을 경우: 상기 비용 이외에 해당 특약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주십시오.

B-1 住宅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について

1 費用負担の一般原則について

- (1) 住宅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については、賃貸人の費用負担で行うとされています。
(例) エアコン（賃貸人所有）・給湯器・風呂釜の経年的な故障、雨漏り、建具の不具合
- (2) 入居期間中、賃借人の故意・過失や通常の使用方法に反する使用など賃借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修繕の必要が生じた場合は、賃借人がその費用を負担するとされています。
(例) 子供が遊んでいて誤って割った窓ガラス、お風呂の空だきによる故障

2 例外としての特約について

上記1の一般原則にかかわらず、賃貸人と賃借人の合意により、入居期間中の小規模な修繕については、賃貸人の修繕義務を免除するとともに、賃借人が自らの費用負担で行うことができる旨の特約を定めることができます。

＜参考＞ 入居中の小規模な修繕としては、電球、蛍光灯、給水・排水栓（パッキン）の取替え等が考えられます。

B-2 当該契約における賃借人の負担内容について

--

※特約がない場合：賃借人の負担は、B-1の1(2)の一般原則に基づく費用のみであることを明記してください。

特約がある場合：上記の費用のほか、当該特約により賃借人が負担する具体的な内容を明記してください。

C 賃借人の入居期間中の、設備等の修繕及び維持管理等に関する連絡先となる者について

	氏名 (商号又は名称)	住所 (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連絡先電話番号
1 共用部分の設備等の修繕及び維持管理等			
<u>設備等の修繕・維持管理等</u>	賃貸人 中野 一太郎	中野区中央△-△-△	03-0000-0000
2 専用部分の設備等の修繕及び維持管理等			
<u>内装、建具等の修繕</u>	賃貸人 中野 一太郎	中野区中央△-△-△	03-0000-0000
<u>その他設備の修繕等</u>	〇〇管理株式会社	中野区中野□-□-□	03-1000-0001

※原則は、賃貸人又は賃貸人の指定する業者。内容により連絡先が分かれる場合は区分してください。

以上のとおり、説明す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

賃 貸 人 (住所) 東京都中野区中央△-△-△
(氏名) 中野 一太郎 印

以上のとおり、説明を受け、本書面を受領しました。平成〇〇年〇〇月〇〇日

借受け予定者 (住所) 東京都西東京市泉町〇-〇-〇
(氏名) 東京 太郎 印

※紛争の未然防止の徹底を図るためには、賃借人だけでなく、賃貸人に対してもできる限り説明し、説明内容についての確認をとっておくことが望ましい。その際には、説明書に賃貸人の確認「確認日・住所・氏名・押印」を受けておくようにしてください。

※青字の部分は記入例です。

B-1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에 대하여

1 비용부담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 (1)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에어컨(임대인 소유)·급탕기·욕탕온수기의 시간에 따른 노후고장, 빗물 누수, 창호 트러블
- (2) 입주기간중 임차인의 고의·과실이나 통상의 사용방법에 어긋나는 사용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선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놀다가 실수로 파손한 유리창, 욕탕온수기의 과열로 인한 고장

2 예외로서의 특약에 대하여

상기 1의 일반원칙에 관계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입주기간중의 소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임차인이 자기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입주중의 소규모 수선으로는 전구, 형광등, 급수·배수전(패킹) 교체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B-2 해당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내용에 대하여

※ 특약이 없을 경우: 임차인의 부담은 B-1의 1(2)의 일반원칙에 의거한 비용만이라는 것을 명기해 주십시오.
특약이 있을 경우: 상기의 비용 이외에 해당 특약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해 주십시오.

C 임차인의 입주기간중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연락처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주된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1 공용부분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			
<u>설비 등의 수선·유지관리 등</u>	<u>임대인</u> <u>나카노 이치타로</u>	<u>나카노구 주오 △-△-△</u>	<u>03-0000-0000</u>
2 전용부분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			
<u>내장, 창호 등의 수선</u>	<u>임대인</u> <u>나카노 이치타로</u>	<u>나카노구 주오 △-△-△</u>	<u>03-0000-0000</u>
<u>기타 설비의 수선 등</u>	<u>○○관리 주식회사</u>	<u>나카노구 나카노 □-□-□</u>	<u>03-1000-0001</u>

※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업자. 내용에 따라 연락처가 나뉘어지는 경우는 구분해 주십시오.

상기의 내용대로 설명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년○○월○○일
임대인 (주소) 도쿄도 나카노구 주오 △-△-△
 (성명) 나카노 이치타로인

상기의 내용대로 설명을 듣고 이 서면을 수령했습니다. ○○○○년○○월○○일
 임차예정자 (주소) 도쿄도 니시토쿄시 이즈미초 0-0-0
 (성명) 도쿄 타로 인

※ 분쟁의 미연방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되도록 설명을 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는 설명서에 임대인의 확인 「확인일·주소·성명·날인」을 받아 두도록 해 주십시오.

※ 과란글씨 부분은 기입례입니다.

(参考)

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

平成16年 3月31日 条例第95号
最終改正 平成29年10月13日 条例第67号

(目的)

第一条 この条例は、宅地建物取引業者（宅地建物取引業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百七十六号。以下「法」という。）第二条第三号に規定する宅地建物取引業者をいう。以下同じ。）が、専ら居住を目的とする建物（建物の一部を含む。以下「住宅」という。）の賃貸借に伴い、あらかじめ明らかにすべき事項を定めること等により、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を図り、もって都民の住生活の安定向上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宅地建物取引業者の説明等の義務)

第二条 宅地建物取引業者は、住宅の賃貸借の代理又は媒介をする場合は、当該住宅を借りようとする者に対して法第三十五条第一項（同条第六項の規定により読み替えて適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り行う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書面の交付又は当該事項の説明に併せて、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これらの事項を記載した書面を交付して説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当該住宅を借りようとするものが宅地建物取引業者である場合は、当該書面についての説明を要しないものとする。

- 一 退去時における住宅の損耗等の復旧並びに住宅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に関し東京都規則（以下「規則」という。）で定める事項
- 二 前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を図るため、あらかじめ明らかにすべきこととして規則で定める事項

(紛争の防止のための措置)

第三条 知事は、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の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るものとする。

(報告の聴取等)

第四条 知事は、この条例の施行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宅地建物取引業者に対し、その業務に関する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의 불일치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이 우선입니다.

(참고)

도쿄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에 관한 조례

2004년 3월 31일 조례 제 95호

최종 개정 2017년 10월 13일 조례 제 67호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택지건물거래업자(택지건물거래업법(1952년 법률 제 176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3호에 규정하는 택지건물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가 오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건물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이라고 한다.)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조치로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이를 통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택지 건물 거래업자의 설명 등 의무)

제2조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주택 임대차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빌리거나 하는 사람에게 법 제 35조 제 1항 (동 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해 대체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해당 사항의 설명과 함께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이들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

단, 해당 주택을 빌리려는 사람이 택지 건물 거래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서면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 퇴거시의 주택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 등의 복구 및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에 대해 東京都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
- (2) 전호에 제시하는 사항 이외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해 사전에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분쟁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 지사(知事)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의 청취 등)

제4조 지사(知事)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택지건물거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指導及び勧告)

第五条 知事は、宅地建物取引業者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宅地建物取引業者に対し、書面の交付若しくは説明を行い、又は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若しくは報告若しくは資料の内容を是正するよう指導及び勧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 一 第二条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又は説明の全部又は一部を行わなかったとき。
- 二 前条の規定による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せず、又は虚偽の報告若しくは資料の提出をしたとき。

(公表等)

第六条 知事は、前条の勧告を受けた者が正当な理由なく当該勧告に従わなかったときは、その旨を公表することができる。

- 2 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公表をしようとする場合は、当該勧告を受けた者に対し、意見を述べ、証拠を提示する機会を与えるものとする。

(委任)

第七条 この条例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この条例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規則で定める。

附 則

この条例は、平成十六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九年条例第六七号）

(施行規則)

- 1 この条例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経過措置)

- 2 この条例の施行の日前に締結された契約に係る指導及び勧告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지도 및 권고)

제 5조 지사는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택지 건물 거래업자에 대해 서면의 교부 또는 설명을 하고, 또는 보고 혹은 자료를 제출하고, 혹은 보고 또는 자료 내용을 시정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 (1)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 또는 설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지 않았을 때.
- (2) 전조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 혹은 자료를 제출했을 때.

(공표 등)

제 6조 지사(知事)는 전조항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2 지사(知事)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한다.

(위임)

제 7조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조례 제 67호)

(시행 기일)

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한 지도 및 권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전의 예에 따른다.

(参考)

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施行規則

平成16年 3月31日 東京都規則第 92号

最終改正 平成29年10月13日 東京都規則第111号

(趣旨)

第一条 この規則は、東京における住宅の賃貸借に係る紛争の防止に関する条例（平成十六年東京都条例第九十五号。以下「条例」という。）の施行について必要な事項を定めるものとする。

(宅地建物取引業者の説明事項等)

第二条 条例第二条第一号の規則で定め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退去時における住宅の損耗等の復旧については、当事者間の特約がある場合又は賃借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復旧の必要が生じた場合を除き、賃貸人が行うとされていること。

二 住宅の使用及び収益に必要な修繕については、当事者間の特約がある場合又は賃借人の責めに帰すべき事由により修繕の必要が生じた場合を除き、賃貸人が行うとされていること。

三 当該住宅の賃貸借契約において賃借人の負担となる事項

2 条例第二条第二号の規則で定める事項は、賃借人の入居期間中の設備等の修繕及び維持管理等に関する連絡先となる者の氏名（法人にあっては、その商号又は名称）及び住所（法人にあって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とする。

3 知事は、宅地建物取引業者が条例第二条の規定による書面の交付又は説明を適正に行うために必要な事項を示すものとする。

(勧告)

第三条 条例第五条の勧告は、勧告書（別記様式）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公表)

第四条 条例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表は、東京都公報への登載その他広く都民に周知する方法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2 公表する事項は、次に掲げる事項とする。

一 勧告を受けた者の氏名（法人にあっては、その商号又は名称及び代表者の氏名）

二 勧告を受けた者の住所（法人にあっては、その主たる事務所の所在地）

三 勧告の内容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知事が必要と認める事項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의 불일치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판이 우선입니다.

(참고)

도쿄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04년 3월 31일 규칙 제 92호

최종 개정 2017년 10월 13일 규칙 제 111호

(취지)

제 1 조 이 규칙은 도쿄의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방지에 관한 조례(2004년 도쿄도 조례 제 95호. 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택지건물거래업자의 설명사항 등)

제 2 조 조례 제 2 조 제 1 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제시된 사항으로 한다.

- (1) 퇴거시의 주택 손모(損耗, 써서 없어진 부분) 등의 복구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복구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 (2) 주택의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수선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선의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
 - (3)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이 되는 사항
- 2 조례 제 2 조 제 2 호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임차인의 입주기간중 설비 등의 수선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락처가 되는 사람의 이름(법인은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은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 3 지사는 택지 건물 거래업자가 조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교부 또는 설명을 적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권고)

제 3 조 조례 제 5 조의 권고는 권고서(별기 양식)를 통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공표)

제 4 조 조례 제 6 조 제 1 항에 의한 공표는 東京都公報에 등재, 기타 널리 도민에게 알리는 방법에 의해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2 공표하는 사항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권고를 받은 사람의 이름(법인은 그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2) 권고를 받은 사람의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
- (3) 권고의 내용
- (4) 전 3 호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지사(知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意見陳述の機会の付与)

第五条 条例第六条第二項の意見を述べ、証拠を提示する機会（以下「意見陳述の機会」という。）におけるその方法は、知事が口頭であることを認めた場合を除き、意見及び証拠を記載した書面（以下「意見書」という。）を提出して行うものとする。

2 知事は、勧告を受けた者に対し意見陳述の機会を与えるときは、意見書の提出期限（口頭による意見陳述の機会の付与を行う場合には、その日時）までに相当な期間において、当該勧告を受けた者に対し、次に掲げる事項を書面により通知するものとする。

一 公表しようとする内容

二 公表の根拠となる条例等の条項

三 公表の原因となる事実

四 意見書の提出先及び提出期限（口頭による意見陳述の機会の付与を行う場合には、その旨並びに出頭すべき日時及び場所）

3 前項の規定による通知を受けた者（以下「当事者」という。）又はその代理人は、やむを得ない事情のある場合には、知事に対し、意見書の提出期限の延長又は出頭すべき日時若しくは場所の変更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4 知事は、前項の規定による申出又は職権により、意見書の提出期限を延長し、又は出頭すべき日時若しくは場所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5 知事は、当事者に口頭による意見陳述の機会を与えたときは、当事者又はその代理人の陳述の要旨を記載した書面を作成するものとする。

6 代理人は、その代理権を証する書面を、意見書の提出期限又は出頭すべき日時までに知事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7 知事は、当事者又はその代理人が正当な理由なく意見書の提出期限内に意見書を提出せず、又は出頭すべき日時に口頭による意見陳述をしなかったときは、条例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公表をすることができる。

附 則

この規則は、平成十六年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附 則（平成二九年規則第百十一号）

この規則は、公布の日から施行する。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제 5 조 조례 제 6 조 제 2 항의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기회(이하 「의견진술의 기회」라고 한다.)에 있어서 그 방법은지사(知事)가 구두로 말하는 것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견 및 증거를 기재한 서면(이하 「의견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여 실행하는 것으로 한다.

- 2 지사(知事)는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때는 의견서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해당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다음에 제시된 사항을 서면을 통해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 (1)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2) 공표의 근거가 되는 조례 등의 조항
 - (3)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4) 의견서 제출처 및 제출기한(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출두해야 할 일시 및 장소)
-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고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지사(知事)에게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 또는 출두해야 할 일시 또는 장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4 지사(知事)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또는 출두해야 할 일시 혹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5 지사(知事)가 당사자에게 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을 때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술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 6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견서 제출기한 또는 출두해야 할 일시까지지사(知事)에게 제출해야 한다.
- 7 지사(知事)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서 제출기한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출두해야 할 일시에 구두에 의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조례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04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년 규칙 제 111 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